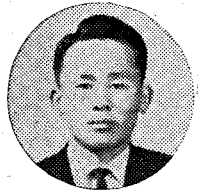


프랑스의 商標制度



金 永 吉
〈特許廳 審査官〉

① 制度의 概要

프랑스의 商標制度는 1857년부터 施行되어 왔으나 1960년에 거의 100년만에 同法律은 改正되고 이 법은 다시 1964년 法律第64—1361號로 개정하여 1965년 8월 1일부터 시행,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海外領土(Outre-mer)에 대하여도 適用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商標法의 本質의인 特徵은 다음과 같다.

(1) 業務標章(marques de service)과 聯合商標(marques collectives)도 保護對象이 되고 있다.

(2) 登錄된 商標의 優位性을 認定하고 標章만의 單獨使用에 대하여는 어떠한 權利도 賦與하지 아니한다.

(3) 商標에 關聯된 모든 繫爭事件은 地方法院의 管轄로 한다.

(4) 商標를 偽造한 物(物)은 법원의 干與없이 이를 押留한다.

(5) 違法行爲에 대한 處罰範圍 및 要件을 強化하고 罰金도 從前보다 더 增額한 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다.

② 商標의 種類

이 나라에서 商標 또는 서어비스마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企業의 生産物, 物品, 서어비스에 使用되는 姓名, 雅號, 地名, 任意로 붙이는 名稱, 製品이나 包裝의 獨特한 形態, 레델, 封套, 表徵, 刻印, 配置圖形, 文字, 數字등을 말한다.

상표나 업무표장의 附着은 任意的이지만 특별한 경우는 參事院의 意見을 들어 大統領令에 따라 例外로 特種의 生産物이나 서어비스에 부착하는 商標 또는 서어비스마크의 사용을 義務化할 수도 있다.

그러나 登錄된 複合商標(marque complexe)의 主要部分의 複製한 경우에는 偽造行爲가 된다.

또한 商標는 그 사용이 公共秩序 또는 美風良俗에 反하는 記號 및 1883년 3월 20일에 調印된 工業所有權의 보호를 위한 파리協約 第6條 3項에 의하여 排除된 記號는 商標 또는 商標의 一部로 보지 아니하며 제품이나 업무의 必須的 또는 一般的인 명칭이거나 一般大衆을 속이기에 알맞는 表示가 包含된 記號와 제품이나 업무의 本質의인 특성이나 제품의 成分을 표시하는 語句만이 들어 있는 記號는 이를 商標로 보지 아니한다.

③ 商標의 登錄

商標를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그 표장을 使用하는 生産物 또는 서어비스의 표시 및 當該類別을 나타낸 표장의 正本을 工業所有權局 또는 居住地의 商事法院書記課에 提出하여야 한다.

外國에 거주하는 登錄出願人은 프랑스 國內에 住所를 選定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公업소유권국에 그 商標를 登錄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出願하기 前에 外國에서 登錄한 事實에 의한 優先權(droit de priorité)은 商標를 登錄할 때에 이를 主張하여야 하며 登錄出願後 6個月 以內에 所定 料金を 豫納한 때에도 公업소유권국에 우선권을 主張할 수가 있다.

商標의 登錄은 關係當事者 또는 프랑스에 주소를 두거나 定住하는 代理人이 이를 行하며 대리인은 反對約

定이 없는 限 상표의 등록출원, 등록 및 公告 등의 업무를 직접 遂行한다.

우선권을 行使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前登錄證寫本과 필요한 경우에는 그 權利를 주장하는데 根據가 되는 證憑書類를 公營소유권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등록출원인은 每 商標마다 다음에 揭記하는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商標登錄出願書
- (2) 상표는 標本과 이 상표를 붙일 제품의 種類, 商標權所有자의 성명 및 주소
- (3) 상표의 鉛版
- (4) 規定된 所定の 요금
- (5)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權限.

更新登錄(dépot en renouvellement)은 新規登錄과 同一한 節次에 의하여 제 1次登錄이 滿了되기전에 이를 출원하여야 한다. 제 1차등록이 등록한 날로부터 10年間 그 効力을 갖는데 商標所有權者는 소정의 요금을 納入하고 계속하여 갱신등록 함으로써 無期限 商標權을 保有할 수가 있다.

第 1次 登錄事項을 전혀 修正하지 아니한 갱신등록은 追加料金を 납입한 때에는 제 1차등록기간이 滿了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출원할 수가 있다.

따라서 有効하게 등록출원한 표장의 등록 및 公告(l'enregistrement et la publication)는 公營소유권국에서 한다.

商標所有權의 移轉, 商標使用權의 讓渡, 商標抵當權의 設定 또는 양도 및 기타 상표에 屬한 權利의 變更 證書 등에 관한 登載申請은 行爲當事者, 그 相續인이나 受遺者 또는 이러한 權利를 正當하게 委任받은 대리인만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① 증거가 私證書인 경우에는 그 原本, 公證書인 경우에는 그 謄本, 死亡으로 因한 所有權移轉의 경우에는 이를 立證할 만한 文書, ② 申請人이 權利讓渡 또는 讓渡證書의 抄本만으로서 第 3者에게 對抗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본과 相違없음이 증명된 초본 ③ 필요한 경우에는 代理權에 관한 증서 ④ 所定手數料 畢納證書 등을 添付하여야 한다.

한편 상표소유권은 最初의 등록을 함으로써 取得하게 되나 등록이 無効가 된 경우일지라도 상표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로서 存續시킬 수 있으며 다만 법률에 규정된 보호만은 받지 못한다.

따라서 商標權의 範圍는 登錄文書를 作成할 때 상표를 사용할 제품을 明示함으로써 定하게 되며 보호를 받게 될 상표의 主要事項도 등록문서에서 정한다.

④ 商標의 所有權

正當한 節次를 거쳐 등록된 상표의 소유권은 絶對的이며 프랑스全域에 걸쳐 그 効力을 미칠뿐만 아니라 手段方法의 如何를 不問하고 善意 또는 惡意로 이를 侵害하는 모든 자에게 對抗할 수 있는 訴權을 갖는다.

상표의 소유권은 原則上 最初의 사용(즉 어떤 상표를 特定商品에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취득한다.

따라서 상표에 대한 권리는 이 상표를 최초로 사용한 날에 그 効력이 생기는 것인 반면에 상표권 등록은 權利賦與의 인 것이 아니고 單純히 宣言의 인 것에 不過하다.

다시 말하면 상표등록은 優先使用權을 推定하게 할뿐만 아니라 상표에 대한 刑法上의 보호를 保障함으로써 상표의 최초의 사용자와 최초의 登錄人 사이에 衝突이 발생한 경우에 우선권을 證明하는 최초의 사용자나 최초의 등록인에 우선하고 있다.

더구나 최초의 상표 사용자는 當該商標를 등록한 후에도 최초의 등록인을 상대로 刑事訴訟을 提起할 수가 있다.

⑤ 商標所有權의 消滅

상표권은 明示의 拋棄에 의하여 이를 喪失할 수 있는 바 등록상표에 관하여는 등록인이 그 상표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商事法院書記課에 이를 申告하여야 하며 법원은 申告事項을 登錄調書의 餘白에 記載하고 이를 公營소유권국에 통지한다.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年間 그 상표를 公然히 사용하지 아니한 때나, 他人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權利를 喪失한다.

또한 상표권자가 一定其間 第 3者에 의한 그 상표의 사용을 默認한 경우에도 상표의 默示的인 포기로서 볼 수가 있다.

이 경우 所有權者가 그 권리포기 이외에 訴訟費用을 勘當하기 어려워 權利侵害者를 寬容했는지의 與否가 關鍵이 되고 있다.

상표권이 消滅된 때에는 이 상표는 無主物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이를 새로 자기의 것으로 할 수도 있고 公有財産으로서 누구든지 이를 利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표권소유자가 일정기간 제 3자로 하여금 自己商標使用를 묵인하여 권리가 상실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